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90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김문수·진성준·박해철
박지원·이광희·민홍철
김 윤·민병덕·김현정
이수진·김우영·김남근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건

전한 발전과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금지행위) ①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소속 임직원 및 강사는 학원의 운영 또는 교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출제·검토·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출제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제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작하거나 취득한 시험의 문항·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도록 청탁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시험의 문항·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재 등 교습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
3.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등 교습자료 또는 그에 관한 정보를 출제자등에게 제공하여 해당 교습자료의 문항이나 정보가 시험에 반영되도록 청탁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항에 따른 행

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다만,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학원설립·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조의3(금지행위) ① 학원설립</u> <u>· 운영자와 그 소속 임직원 및</u> <u>강사는 학원의 운영 또는 교습</u> <u>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u> <u>거나 이를 알선·중개하여서는</u> <u>아니 된다.</u></p> <p>1. 「<u>초·중등교육법</u>」, 「<u>고등</u> <u>교육법</u>」, 그 밖의 법령에 따 <u>라 실시되는 각종 시험(이하</u> <u>“시험”이라 한다)의 출제·검</u> <u>토·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u> <u>수행하는 자(이하 “출제자등”</u> <u>이라 한다)에게 출제자등이</u> <u>직무와 관련하여 제작하거나</u> <u>취득한 시험의 문항·정보 등</u> <u>을 제공하도록 청탁하거나 권</u> <u>유하는 행위</u></p> <p>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시험 <u>의 문항·정보 등을 이용하여</u> <u>학원의 교재 등 교습자료를</u> <u>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u> <u>행위</u></p>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3.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등 교습자료 또는 그에 관한 정보를 출제자들에게 제공하여 해당 교습자료의 문항이나 정보가 시험에 반영되도록 청탁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다만,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학원설립·운영자가 그 위반행위

<p>7. ~ 12.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p> <p>1. 2. (생략) <신설></p> <p>3. 4. (생략) ② · ③ (생략)</p>	<p><u>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 ----- ----- ----- - <u>다만,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1. 2. (현행과 같음) 2의2. <u>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u></p> <p>3.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	--